



「금융거래 한도계좌」 개설 안내

“객관적 증빙서류가 없어 입출금 통장개설이 곤란한 손님도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”

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개설을 원하는 손님은 전기통신금융사기(보이스피싱)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‘금융거래 목적 확인서’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손님은 아래와 같이 「금융거래 한도계좌」로 개설이 가능합니다.
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의6 제4항)

대상 고객

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손님

- ※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4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‘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’ 제5조 제3항에 따라 신규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.
- ※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의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신규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.

대상 계좌

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(금융회사 별 1인당 1계좌)

금융거래의 범위 및 한도 (거래종류 별 1일 거래한도)

| 거래 구분 | 영업점 창구 거래 | 자동화기기 거래 | 전자금융 거래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1일 거래 한도 | 300만원 | 100만원 | 100만원 |

- ※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사전에 지정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만 거래(인출/이체) 가능합니다.

계좌개설 이후 금융거래 목적 확인 시 거래한도 해제하여 거래 가능

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유의사항]

- ※ 현금(체크)카드·통장·인증서·이용자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(이하 ‘접근매체’라 함)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,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한 자, 접근매체의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·중개·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·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,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※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, 위조, 변조,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·알선·판매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,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, 강제로 빼앗거나, 횡령하거나,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·알선·판매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는 동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※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도 벌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(동법 제50조제1~제2항).
- ※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피해자 또는 은행에게 질 수 있습니다.

[CC브랜드240827-0284]